



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알아보기!!

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
카드뉴스



보건복지부



중앙사회서비스원



사회서비스(Social services)란?

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
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

“ **복지·보건·의료·교육** ”

고용·주거·문화·환경 등

분야에서 **인간다운 생활을 보장**하고

상담, 재활, 돌봄, 정보의 제공, 관련 시설의

이용, 역량 개발, 사회참여 지원 등을

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

지원하는 제도

(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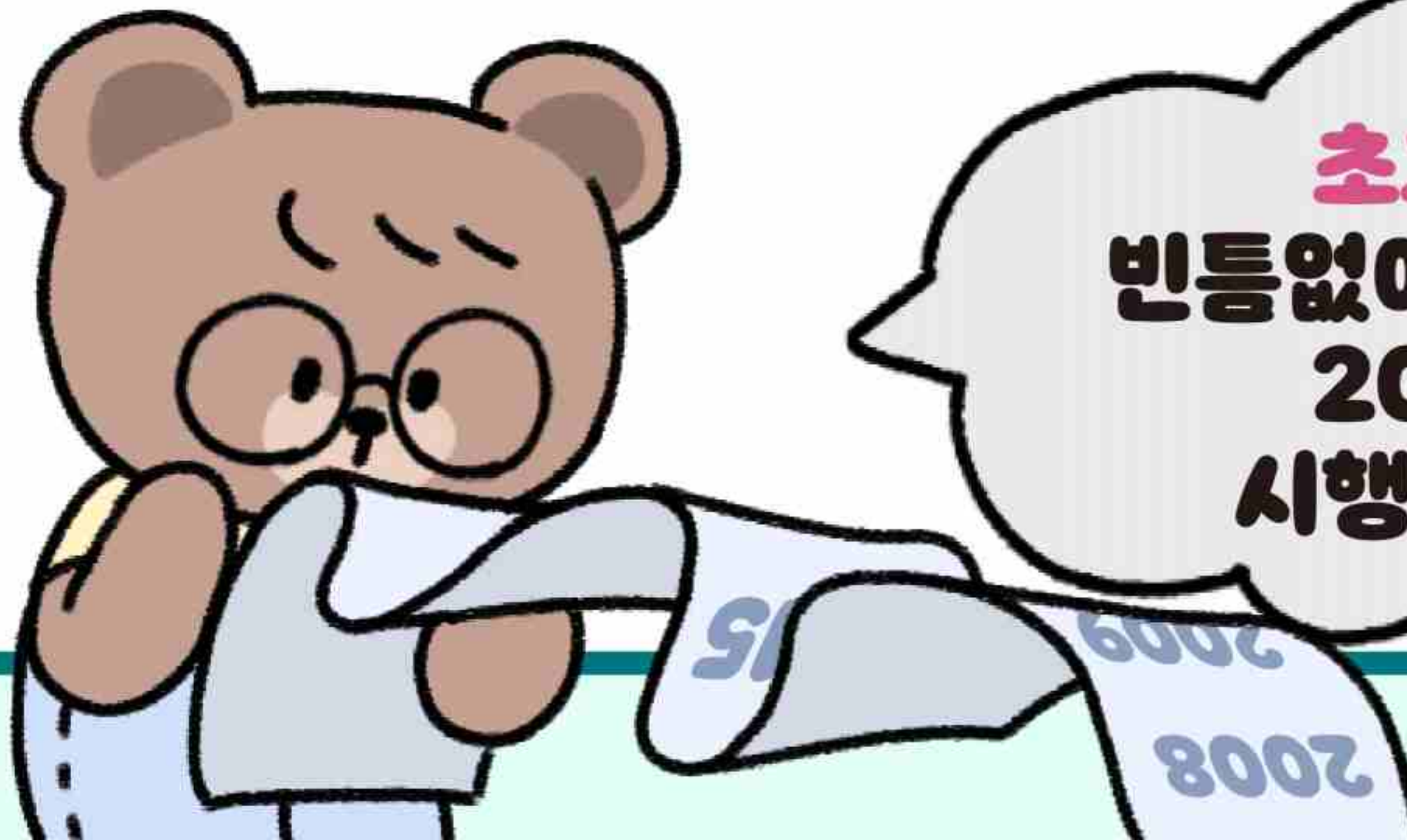
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
목욕이나 집안일 등
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
신체활동·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

노후 생활의 안정과
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
사회보험제도



초고령사회를
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
2008년부터
시행된 제도구나!

급여의 종류

1 시설급여

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


2 재가급여

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단기보호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


3 특별현금급여

삼·벽지 거주자 등*에게 가족요양비 지급

*삼·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

서비스 신청 및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.



- 1 이용자**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
※의사소견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
- 2 국민건강보험공단**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
- 3 등급판정위원회**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
- 4 장기요양센터**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(공단 → 수급자)
- 5 수급자**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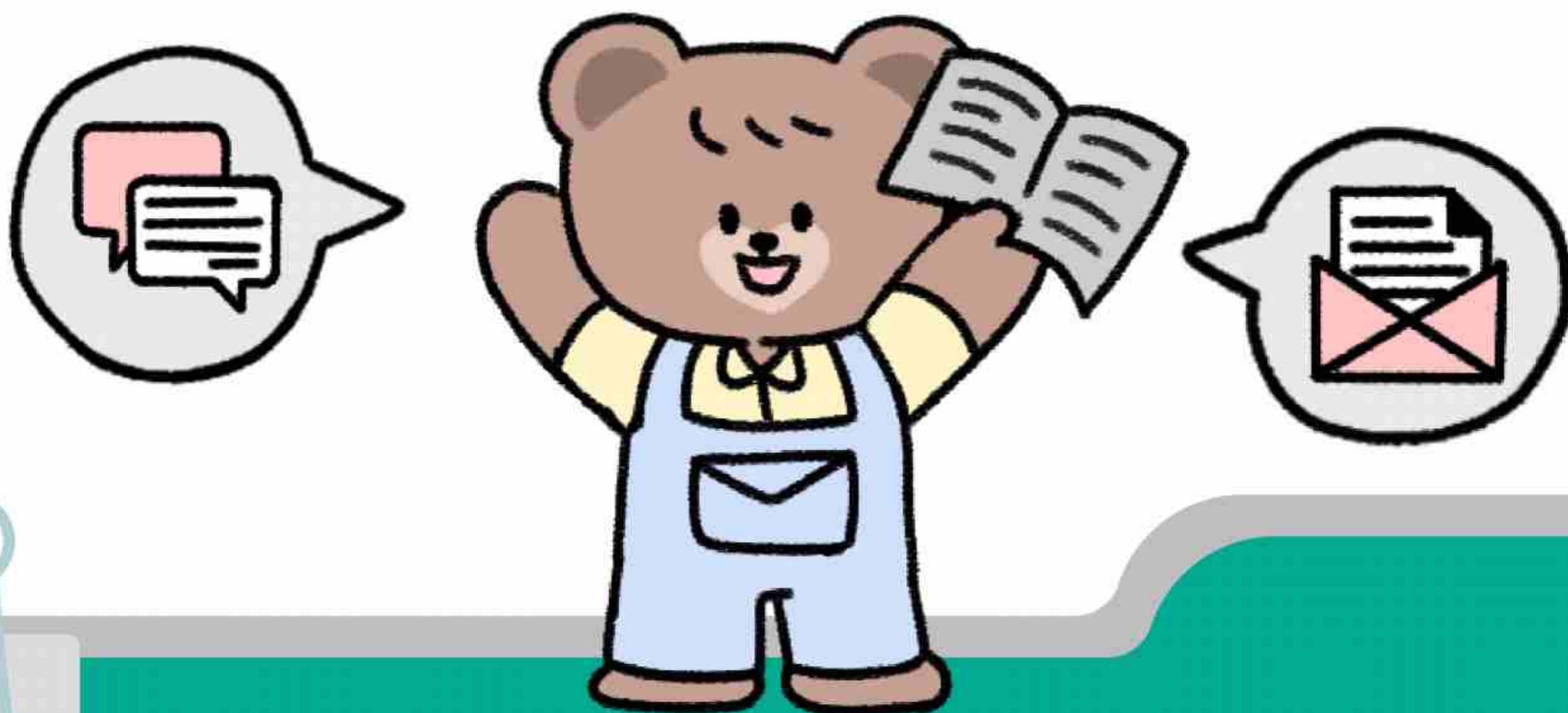
장기요양인정 신청은 **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*, 전화****로 가능하며, 신청인이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, 친족,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.

*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, 모바일앱(The건강보험)

** 1577-1000(갱신신청에 한함)

이용자의 권리 1

이용자는 장기요양기관과
협약하여 장기요양급여
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
★ **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
내용을 요청**할 수 있어요.



이용자의 권리 2

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를
이용함에 있어 **본인의 인권을**
침해당하지 않고
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.



잠깐!



이용자의 권리만큼
요양보호사의
권리도 소중해요.

**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위해
다음의 사항을 지켜주세요.**

요양보호사의

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세요.

요양보호사에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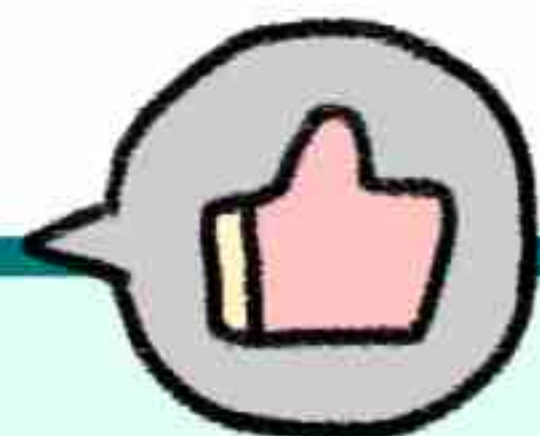
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해서는 안돼요.

폭언, 불필요한 신체 접촉 및 불쾌하거나
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.

이용자와 요양보호사는
서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하며,
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
요양보호사 등 **공식적인 호칭**을
사용해 주시고,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
쓰시는 것이 좋아요.

처음 제공 계약 시 **협의되지 않은**
서비스를 요구하면 안되며,
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,
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해야 해요.



+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,
* 올바른 정보알기에서 시작합니다.



소중한 당신 결엔

언제나 든든한

사회서비스가

있습니다♡



내가 사는 곳에서 받는,
두터운 돌봄. 노인장기요양보험.

보건복지부



중앙사회서비스원

